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
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88호, 2023.8.8. 공포, 2024.5.17.시행)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전승자 등의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사항 마련(안 제19조의2)
 -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절차 및 범위 등을 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2) 입법예고 예정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체득·보존하여”를 “체득·보전하여”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범죄경력조회) ① 문화재청장은 법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한다.

1.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의 인정 시
2. 법 제18조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시
3. 법 제19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 시
4. 법 제21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사유 확인 시

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

를 확인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요청서,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
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보유자 등의 인정) ① · ② (생 략)	제16조(보유자 등의 인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 상 보유자, 보유단체를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”란 해당 국가무 형문화재의 기능·예능 또는 지 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 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<u>체득·</u> <u>보존하여</u> 그대로 실현할 수 있 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체득·보</u> <u>존하여</u> ----- ----- -----.
④ ·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19조의2(범죄경력조회) ① 문화</u> <u>재청장은 법21조의2에 따라 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 <u>는 경우에 관할 시·도경찰청장</u> <u>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</u> <u>회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</u> <u>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</u> <u>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</u> <u>해야 한다.</u>

1.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의 인정 시

2. 법 제18조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시

3. 법 제19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 시

4. 법 제21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사유 확인 시

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,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968